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I.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상 도출된 규제저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범력을 확립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 예방규정 작성 대상 완화(시행령 제15조)

〈현 행〉

인화점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예방규정 작성대상임

〈개정안〉

인화점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사 유〉

대부분의 석유판매점의 경우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반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적으므로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및 자격제한 완화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및 규칙 제56조)

〈현 행〉

-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할 수 있는 제조소등

- 5개 이하의 보일러용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3개 이하의 충전용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이하의 제조소등
- 시행령 별표 6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제조소등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한에 있어서 제조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제1석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시 구비서류(별지 제32호서식 포함)
- 국가기술자격증
 - 안전관리자수첩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56조 :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할 수 있는 제조소등
- 옥내저장소(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하나의 방유제(防油堤)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와 그에 인접한 방유제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각 방유제 안의 면적의 합이 8만제곱미터 이하이고, 탱크 수의 합이 3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옥외저장소(각 저장소의 경계표시 안의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개정안>

-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할 수 있는 제조소등
- 7개 이하의 보일러용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5개 이하의 충전용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5개 이하의 제조소등
- 시행령 별표 6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함
 - 시행규칙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시 구비서류(별지 제32호서식 포함)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56조 :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할 수 있는 제조소등
 - 옥내저장소(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옥외탱크저장소(인접한 방유제 내에 있는 30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옥외저장소(각 저장소의 경계표시 안의 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개 요>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중복선임 범위를 확대함
- 제조소 중 소규모의 것과 제1석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소규모의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사 유>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부담을 완화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제한을 강화하여 제1석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기 배출된 국가기술자격자의 안전관리자 전직기피, 기업주의 신규채

용 곤란, 관련업체 종사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곤란 등의 사유로 법준수가 현저하게 곤란하고 심각한 규제저항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관리자 자격제한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 자체소방대 설치기준 규정 문구수정(시행령 별표 8)

〈현 행〉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개정안〉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사 유〉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둔 사업장이나, “제조소등”으로 표현함에 따라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문구를 수정함

○ 전자적 민원처리 방법 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9조제2항)

〈현 행〉

-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9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방법 및 수수료 납부방법
설치허가신청을 종이문서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납부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9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방법 및 수수료 납부방법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민원처리 및 수수료납부방법을 규정함

〈개 요〉

설치허가신청을 종이문서 뿐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제출할 수 있고, 수수료납부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화폐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유〉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행정의 전자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민원 편의 도모

○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완화기준 확대적용

(시행규칙 별표 6 II제5호)

〈현 행〉

지정수량의 4천배 초과인 옥외탱크저장소는 물분무설비를 하는 경우 보유공지를 2분의 1까지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수량의 4천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는 보유공지 단축기준이 없음

〈개정안〉

지정수량 4천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도 물분무설비를 하면 보유공지를 2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개 요〉

지정수량의 4천배 초과인 옥외탱크저장소 뿐 아니라 지정수량 4천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도 물분무설비를 하면 보유공지를 2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사 유〉

지정수량 4천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도 물분무설비를 하는 경우 보유공지를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없어 이를 허용함

⇒ 이 규정은 방유제 내에 옥외탱크저장소가 1기만 설치된 경우에 실효가 있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방유제 내에 수기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성이 없었으나(방유제 내에 수기의 옥외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가 3분의1까지 단축됨), 방유제 내에 1기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의 발생에 따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제한 완화(시행규칙 별표 7 I 제2호차목)

<현 행>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5,000ℓ) 이하로 용량이 제한됨

<개정안>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중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로 용량제한 기준을 확대함

<개 요>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제한을 일률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또는 5천리터로 제한하던 것을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0배 또는 2만리터로 완화하여 도시지역 건축물의 난방용 유류탱크 설치를 용이하게 함

<사 유>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을 제한하는 취지는 일반건축물 내에 위험물탱크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독립된 위험물전용실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된 위험물전용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일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완화

(시행규칙 별표 17 I 제1호가목)

〈현 행〉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여 물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함

〈개정안〉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중 소규모 및 방화구획 된 것은 소화난이도등급Ⅱ로 완화함

〈개 요〉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구분에 있어서 모든 대상이 소화난이도등급 I 이던 것을 화재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및 방화구획 된 것에 한하여 소화난이도등급Ⅱ로 완화함

〈사 유〉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을 I 등급으로 규정한 것은 옥내탱크저장소 화재발생 시 같은 건축물 내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전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소규모 및 방화구획 된 것의 경우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소의 조명설비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4 V 제2호)

〈현 행〉

조명설비에 비상발전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만 채광설비를 면제함

〈개정안〉

조명설비에 비상발전설비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광설비를 면제함

〈사 유〉

채광설비는 일상적인 위험물 취급중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상발전설비를 부착하지 않아도 그 기능에 지장이 없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

〈현 행〉 : 행정자치부장관

〈개정안〉 : 소방방재청장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오류 정정(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및 다목)

〈현 행〉

- 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90일”로 규정됨
- 규칙 별표 2 제2호 다목의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90일”로 규정됨

〈개정안〉

- 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취소”로 개정함
- 규칙 별표 2 제2호 다목의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을 “등록취소”로 개정함

〈사 유〉

- 규칙 제58조제1항에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취소”로 규정하고 있음
⇒ 본조와 별표의 불일치 오류 정정

- 법 제16조제5항에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을 “등록취소”로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 위반되는 규칙 개정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실시시간연장 신청서식 규정(규칙 제65조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현 행〉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실시시간연장 신청서식 미규정

〈개정안〉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실시시간연장 신청서식 규정

〈사 유〉

- 민원신청의 편의 및 행정업무 간소화

○ 위험물안전카드 작성서식 규정(규칙 별표 21 및 별지 제48호 서식)

〈현 행〉

- 위험물운송자의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및 기록내용만 규정

〈개정안〉

- 위험물운송자의 위험물안전카드 작성서식 규정화

〈사 유〉

- 위험물안전카드의 작성서식을 규정화하여 법준수의 편의 도모

○ 인용조문 및 표기 오류 정정(시행령 별표 3, 규칙 제51조, 규칙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8)

〈현 행〉

- 시행령 별표 3 제1호중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주유설비를”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제51조제2항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별표4 부표 제1호중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문화재에 대한 안전거리를 33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별표 4 II제1호 표중 “10배 미만” 및 “10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별표 6 II제2호중 “동일한 방유제안에”로 규정되어 있음
- 규칙 별표 6 IX제2호중 “제1호가목·나목·사목 내지 타목 및 하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규칙 별표 18 III제1호가목2)중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 시행령 별표 3 제1호중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로 개정함
- 규칙 제51조제2항중 “법 제20조제2항”으로 개정함
- 규칙 별표4 부표 제1호중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문화재에 대한 안전거리를 38미터로 개정함
- 규칙 별표 4 II제1호 표중 “10배 이하” 및 “10배 초과”로 개정함
- 규칙 별표 6 II제2호중 “동일구내에”로 개정함
- 규칙 별표 6 IX제2호중 “제1호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으로 개정함
- 규칙 별표 18 III제1호가목2)중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로 개정함

〈사 유〉

- 주유설비와 급유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수정함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의 안전거리는 10배 미만인 경우의 안전거리인 35미터에 약 10%를 가산한 거리이어야 하므로 38미터가 타당함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합성수지류를 규정하고 있음(인용조문 오류)
- 법 제20조제2항의 단서 뿐 아니라 본문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정함
- 배수 구분기준을 다른 제조소등과 동일화 함
- 용어 및 인용조문 수정

Ⅲ. 신규대비표(별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p> <p>② (생략)</p> <p>1. 및 2. (생략)</p> <p>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저장소가 ----- ----- -----,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 한다.</p> <p>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략)</p> <p>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u>5개 이하</u>의 일반취급소와 ----- ----- 설치한 경우</p> <p>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u>3개 이하</u>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 ----- 경우</p> <p>3. (생략)</p> <p>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u>3개 이하</u>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p> <p>가. 및 나. (생략)</p> <p>5. (생략)</p>	<p>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p> <p>② (생략)</p> <p>1. 및 2. (생략)</p> <p>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저장소가 ----- ----- -----,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u>소방방재청장</u>이 정하여 고시하는 ----- 한다.</p> <p>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략)</p> <p>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u>7개 이하</u>의 일반취급소와 ----- ----- 설치한 경우</p> <p>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u>5개 이하</u>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 ----- 경우</p> <p>3. (생략)</p> <p>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u>5개 이하</u>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p> <p>가. 및 나. (생략)</p> <p>5. (생략)</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7. (생략)</p> <p>가. (생략)</p> <p>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p>	<p>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7. (생략)</p> <p>가. (생략)</p> <p>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p>
<p>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p> <p>1.~3. (생략)</p> <p>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행정자치부장관</u>의 운반용기검사</p> <p>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행정자치부장관</u>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 안전교육</p> <p>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행정자치부장관</u>의 안전교육 중-----</p> <p>----- 위탁한다.</p>	<p>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p> <p>1.~3. (생략)</p> <p>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방재청장</u>의 운반용기검사</p> <p>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방재청장</u>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 안전교육</p> <p>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방재청장</u>의 안전교육 중 -----</p> <p>----- 위탁한다.</p>
<p>[별표 1] 비교</p> <p>1. “산화성고체”라 함은 -----</p> <p>-----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p> <p>---- 말한다.</p>	<p>[별표 1] 비교</p> <p>1. 산화성고체”라 함은 -----</p> <p>-----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소방방재청장</u>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p> <p>----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1. 고정된 주유설비----- -----</p> <p>--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u>주유설비</u>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p> <p>[별표 5]</p> <p>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p>	<p>[별표 3]</p> <p>1. 고정된 주유설비----- -----</p> <p>--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u>급유설비</u>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p> <p>[별표 5]</p> <p>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소방방재청장</u>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p>

<현행>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1.	(40	4	40
)			
	2.	40	4	
	3.		40	
	4.	40	4	40 (
)			
5.	,			
6.	1	5	,	
	,	,	,	
1.	(
	4)	
	2.	40	(40
	4)	1
	가.	,		
3.			40	4
	(40)	
4.	1	3		
20	(40	4
)				
5.	1	4		

<개정안>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1.	4	3
2.	4	2 . 3 . 4 . 5
3.	1	2
1.	4	5
	4	. 2 . 3
	. 4	. 40
2.	4	10
	4	2 . 3 . 4
	.	50
3.	4	10
	4	2 . 3 . 4
	.	
4.	4	100
	4	1 . 2
	. 3 . 4	. 250
5.	4	
6.	4	
	40	
7.	,	
8.	,	
		250 (1
	100)	
9.	1	8

<개정안>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1. _____	4		
12		1	5
2. _____	4		
12	24	2	10
3. _____	4		
24	48	3	15
4. _____	4		
48		4	20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 -----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생략) ②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및 ④ (생략)</p>	<p>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생략)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및 ④ (생략)</p>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생략)</p> <p>1. 및 2. (생략)</p> <p>3. <u>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u></p> <p>4. (생략) 〈신설〉</p>	<p>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생략)</p> <p>1. 및 2. (생략)</p> <p>3. <u>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u></p> <p>4. (생략)</p> <p>5. <u>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u></p>
<p>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 (생략)</p> <p>1. <u>옥내저장소(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u></p> <p>2. 하나의 방유제(防油堤)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와 그에 인접한 방유제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각 방유제 안의 면적의 합이 8만제곱미터 이하이고, 탱크 수의 합이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3. ~ 5. (생략)</p> <p>6. 옥외저장소(각 저장소의 경계표시 안의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 (생략)</p> <p>1. <u>옥내저장소(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u></p> <p>2. 하나의 방유제(防油堤)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와 그에 인접한 방유제 안에 설치된 다수의 옥외탱크저장소(각 방유제 안의 탱크 수의 합이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3. ~ 5. (생략)</p> <p>6. 옥외저장소(각 저장소의 경계표시 안의 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9조(수수료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3) 1차 행정처분 기준 "<u>업무정지 90일</u>"</p> <p>별표 2 제2호다목(3) 1차 행정처분 기준 "<u>업무정지 90일</u>"</p> <p>별표 4 II 1.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p> <p>별표 4 V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u>조명설비(비상발전설비를 갖춘 것에 한한다)</u>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9조(수수료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 ----- ----- --,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에 한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3) 1차 행정처분 기준 "<u>지정취소</u>"</p> <p>별표 2 제2호다목(3) 1차 행정처분 기준 "<u>등록취소</u>"</p> <p>별표 4 II 1.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p> <p>별표 4 V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u>조명설비가</u>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부표 제1호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문화재에 대한 안전거리 “<u>33미터</u>”</p> <p>별표 6 II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u>동일한 방유제 안에</u>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별표 6 II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u>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이하 이 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u></p>	<p>별표 4 부표 제1호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문화재에 대한 안전거리 “<u>38미터</u>”</p> <p>별표 6 II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u>동일구내에</u>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별표 6 II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u>옥외저장탱크(이하 이 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최소 3m)의 너비로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7 I 제1호가목 (옥내탱크저장소의 란)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점 40℃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p> <p>별표 18 III제1호가목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시행령 <u>별표 3</u>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 (이하 III에서 “합성수지류등” 이라 한다)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p> <p>별표 18 III 1. ~ 10. (생략)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u>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및 최대적재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별표 17 I 제1호가목 (옥내탱크저장소의 란)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40℃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배(지하층에 설치된 것은 10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p> <p>별표 18 III제1호가목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시행령 <u>별표 2</u>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 (이하 III에서 “합성수지류등” 이라 한다)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p> <p>별표 18 III 1. ~ 10. (생략)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u>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1 제2호</p> <p>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u>운송하게 하는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응급조치요령을 알기 쉽게 기록한 카드(이하 바목에서 “위험물안전카드”라 한다)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u></p> <p>별지 제32호서식 <첨부서류></p> <p>1. 및 2. (생략)</p> <p>3. <u>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u></p> <p>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별표 21 제2호</p> <p>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u>별지 제48호서식의 카드(이하 바목에서 “위험물안전카드”라 한다)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u></p> <p>별지 제32호서식 <첨부서류></p> <p>1. 및 2. (생략)</p> <p>3. <u>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u></p> <p>4. (생략)</p> <p>5. <u>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합니다)</u></p> <p>별지 제39호의2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시간연장 신청서) *별첨</p> <p>별지 제48호서식 (위험물안전카드) *별첨</p>

[별지 제39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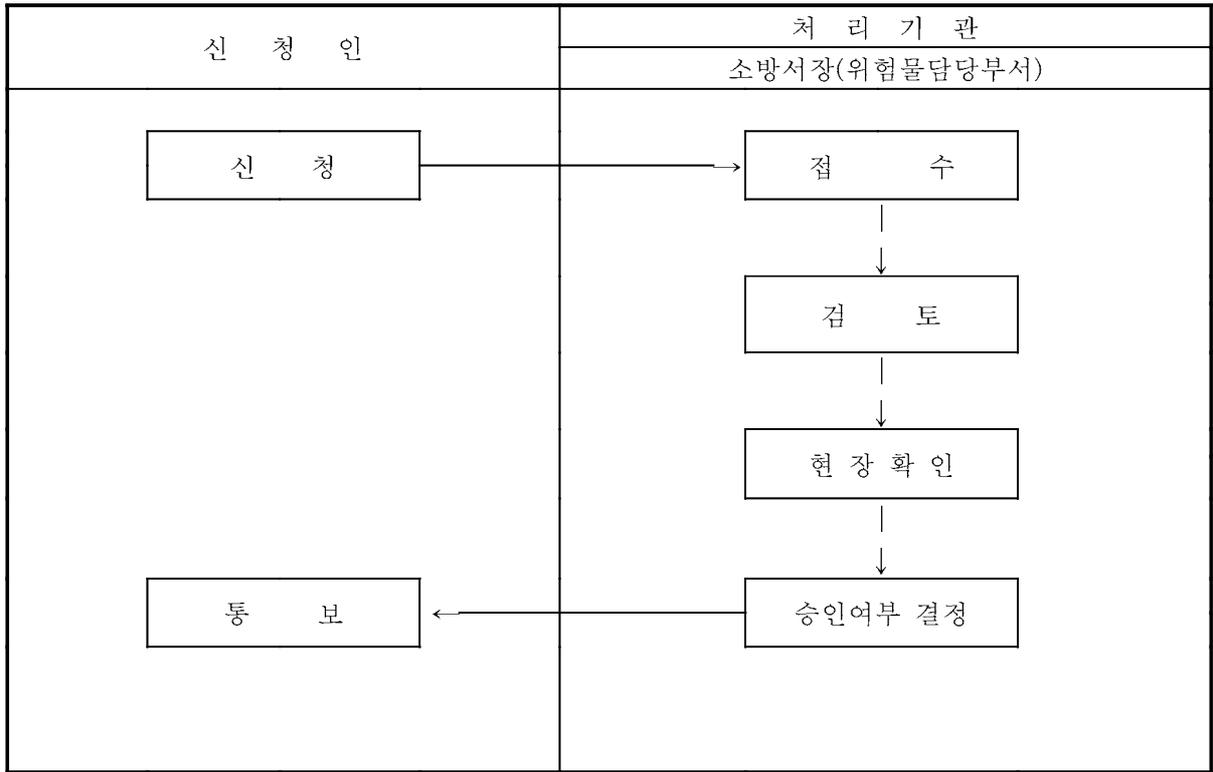
(앞 쪽)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탱크번호
⑥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⑦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연월일		년 월 일
⑧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⑨비 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서명(또는 인) </p>		
첨부서류 :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란	※ 비 고	※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승인연월일 승인번호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물 질 명												UN No.														
												CAS No.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총 포 · 도 검 · 화 약 류 등 단 속 법																	
유 별						품 명			유 독 물	취 급 제 한 유 독 물	관 찰 물 질	화 약	폭 약	화 공 품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5 류	제 6 류																					
특 성		위 험 성			유 해 성			환 경 오 염 성	기 타 위 험 성			성 상														
		금 수 성	폭 발 성	가 연 성	유해가스 발생			하 천 등 유 입 주 의				고 체	액 체	기 체	수 용 성											
					상 온	고 온	물 과 접 촉									눈·피부 접 촉 시 위 험 성										
<p><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p><긴급신고 번호> : 소방서(119), 경찰서 (112), 시군구청(128), 한국도로공사(080-701-0404)</p> <p><긴급신고 내용> :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자 명칭</p>																										
<p><긴급 연락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화 주</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td> <td style="width: 50%;">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운송자</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화 주</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화 주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운송자</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운송자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화 주</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화 주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text-align: center;">운송자</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 화</td><td>(주간) (야간)</td></tr> </table>	운송자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화 주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운송자																										
주 소																										
전 화	(주간) (야간)																									

(뒤쪽)

비고

1. 물질명란에는 화학명, 통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 표기를 하고, 품명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기재합니다.
3.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 표기를 하고, 기타 위험성란에는 기타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화재 사고발생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리약제 등을 기재합니다.

《끝》